

창원지방법원 2020. 4. 29 선고 2020가단169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 결선고 2020. 4. 2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3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예지희

별지